

문1) 관세법령상 통 관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물음1) 통관의 정의를 간략히 쓰고, 통관요건 3가지를 설명하시오. (10점)
물음2)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1)원산지확인기준 2가지와 (2)통관제한 사유 4가지를 쓰고 (3)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사유와 (4)세관장의 후속조치 5가지를 쓰시오. (15점)
물음3)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의 제한에 의거하여 (1)수출입의 금지물품 3가지 (2)지식재산권 보호대상 6가지 (3)통관의 보류사유 6가지를 각각 쓰시오. (15점)
물음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1)보세구역반입명령 사유와 (2)반입명령대상물품 2가지를 쓰고 (3) 관계당사자(반입의무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후속조치 4가지를 쓰시오,
금번 시험의 경우, 정확히 쓰는 스킬이 필요하며 문제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어찌 보면 쉬운 시험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들 문제없이 쓰셨으리라 생각되며, 무엇보다 저의 심화과정 및 문제풀이과정에서 수업시간에 배포한 논제를 보셨던 분이라면, 전 논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한 기술 가능하셨으리라 봅니다. 예전 해설과 마찬가지로 기출의 근거로 (거의 반년간 진행되는 모의고사 논제는 제외합니다)정식 커리큘럼과정인 심화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에서 배포한 논제 번호 및 논제제목 참고로 기술합니다.
관관세사 기본문제풀이 및 문제풀이 과정 기출근거
관장현 심화강의 및 문제풀이에서 제시된 2021 50점논제 관련 논제들

문 1-9) 관세법상 환적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소, 환적물품의 원산지표시규정 위반 시 관세법상 처리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 13-1) 통관의 통칙내용 중 세관장의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규정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을 설명하시오.
문 13-2) 통관의 통칙내용 중 통관의 요건 중 의무이행의 요구, 통관표지의 부착에 대하여 설명하고, 통관물품의 사후관리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 13-3) 관세법상 원산지규정의 입법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규정 및 환적제한 규정의 내용과 이때 원산지 판단기준은 각각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 13-6) 관세법상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의 원산지결정 기준, 실질적변형기준의 원산지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 13-12) 관세법 제 234조의 수출입금지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지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처벌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 13-14)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보호대상권리, 보호대상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B 12-3) 관세법상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B 12-4) 관세법상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대상물품, 대상사유 및 반입절차와 반입물품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통관의 정의를 간략히 쓰고, 통관요건 3가지를 설명하시오.
1. 통관의 정의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에서는 수출, 수입, 반송 3가지를 통관의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수출, 수입, 반송의 정의
①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은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2. 통관의 요건 3가지
(1)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의무이행의 요구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II,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1)원산지확인기준 2가지와 (2)통관제한 사유 4가지를 쓰고 (3)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지사유와 (4)세관장의 후속조치 5가지를 쓰시오.
1. 원산지확인기준 2가지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원산지검증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완전생산기준)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실질적 변형기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관세청장은 전술한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통관제한 사유 4가지
(1)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제한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식품위생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제한한다.
3.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사유와 (4)세관장의 후속조치 5가지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리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4. 세관장의 후속조치 5가지
(1) 보수작업승인 및 시정명령
원산지표시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수입신고전에는 보수작업으로, 수입신고 후에는 시정명령으로 보완정정후 통관이 가능하다.
(2) 외국물품의 유치 및 고발
환적되는 물품이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외국물품은 이를 유치하고, 이러한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고발 하여야 한다.
(3) 수정명령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관장

은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
여야 한다.
(4) 유치해제 또는 매각
수정명령이 이행된 경우 유치는 해제되며, 수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매각
할 수 있다.
(5) 폐기명령
매각 대상 물품이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i>or 아래라 같이 써도 분명 접수 가 나갈겁니다.</i>
(1) 보관장소 반입
(2) 유치사실 통지
(3) 수정명령
(4) 유치해제
(5) 매각
III.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의 제한에 의거하여 (1)수출입의 금지물품 3
가지 (2)지식재산권 보호대상 6가지 (3)통관의 보류사유 6가지를 각각 쓰시오.
1. 수출입금지물품 3가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이는 절대적 금지
품목으로서, 이를 수출입 하게되면 금지품 수출입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
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6가지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3. 통관의 보류사유 6가지
(1) 일반물품 통관보류사유 6가지
<1>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고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채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채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각각"이란 표현이 통관의 제한안에 보류사용가
2곳에 6가지씩 존재하거든요.
(2) 지식재산권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 6가지
</>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IV.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1)보세구역반입명령 사유와 (2)반입명령대상물품 2
가지를 쓰고 (3) 관계당사자(반입의무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후속조치 4가지를
쓰시오
1. 보세구역반입명령 사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
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관의 통칙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
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4)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반입명령대상물품 2가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3. 관계당사자(반입의무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후속조치 4가지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반입명령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기한등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공시송달도 가능하다.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국외반출, 폐기, 수정명령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보관의무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심사시 자료제출 요구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중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조사와 처분)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부정환급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 환특법상 교사범, 방조범 예비범, 미수범 처벌규정에 해당하며,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다.
2. 부정소요량계산서작성죄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환특법상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며,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다.
3. 부정 기납증 발급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및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환특법상

